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20075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나200753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0641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정

담당변호사 이남철

변론 종결 2022. 9. 1.

판결 선고 2022. 10. 27.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 20. 선고 2020가합1064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14. 접수 제156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예비적 청구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8.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136,2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6,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칭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3쪽 7행의 "2008. 5. 9."을 "2018. 5. 9."로 고친다.
- 3쪽 8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4쪽 하2행의 "갑 제14호증" 다음에 "갑 제15호증"을 추가한다.
- 5쪽 4행의 "점 등을 종합하면"을 "점, 위 검토서 작성자는 2019. 8. 8.을 '사해행위를 안 날'로

기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93조에 의거 독촉납부기한인 2019. 6. 14.이 경과한 후 체납자(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 확보 및 체납처분(압류 등)이 가능하였고, 체납자(B)의 재산내역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체납처분 가능 재산 소유 여부를 검토하던 중 2019. 8. 8.

사해행위로 추정되는 이 사건 증여계약 관련 내용을 확인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실제로 위 검토서에 첨부된 '등기사항증명서'와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독촉납부기한 경과 후인 2019. 6. 20.

열람되거나 2019. 10. 22. 출력된 점 등을 종합하면"으로 고친다.

○ 7쪽 10, 11행을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산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도 추정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로 고친다.

○ 8쪽 6행의 "증거들만으로는" 다음에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광만

판사김선아

판사천지성

별지